건설안전 실무만화

안전관리계획서













건설안전 실무만화

안전관리계획서 · 핵심 확인사항

층수 하나만 보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면 놓칠 수 있습니다. 시설물 종류, 굴착, 사용 장비, 가설구조물과 발주·인허가 조건을 함께 검토하세요.

아래에서 제98조제1항과 연결되는 가설구조물 대상 전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시설공사는 제98조제1항의 적용에서 제외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 대상과 중복되면 통합 작성 가능 규정을 확인하되 각각의 제출·검토 절차는 구분합니다.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은 별도 제도입니다.

그림은 이해를 돕는 설명 예시입니다. 전체 대상·예외·절차·근거는 연결된 본문과 공식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안전한플랜 · 만화 제작 2026.10.30. · 기관 주소·철골 데이터 개별 대조일은 본문 표시

건설안전 실무만화

안전관리계획서













건설안전 실무만화

안전관리계획서 · 핵심 확인사항

층수 하나만 보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면 놓칠 수 있습니다. 시설물 종류, 굴착, 사용 장비, 가설구조물과 발주·인허가 조건을 함께 검토하세요.

아래에서 제98조제1항과 연결되는 가설구조물 대상 전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시설공사는 제98조제1항의 적용에서 제외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 대상과 중복되면 통합 작성 가능 규정을 확인하되 각각의 제출·검토 절차는 구분합니다.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은 별도 제도입니다.

그림은 이해를 돕는 설명 예시입니다. 전체 대상·예외·절차·근거는 연결된 본문과 공식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안전한플랜 · 만화 제작 2026.10.30. · 기관 주소·철골 데이터 개별 대조일은 본문 표시

건설안전 실무만화

안전관리계획서













건설안전 실무만화

안전관리계획서 · 핵심 확인사항

층수 하나만 보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면 놓칠 수 있습니다. 시설물 종류, 굴착, 사용 장비, 가설구조물과 발주·인허가 조건을 함께 검토하세요.

아래에서 제98조제1항과 연결되는 가설구조물 대상 전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시설공사는 제98조제1항의 적용에서 제외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 대상과 중복되면 통합 작성 가능 규정을 확인하되 각각의 제출·검토 절차는 구분합니다.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은 별도 제도입니다.

그림은 이해를 돕는 설명 예시입니다. 전체 대상·예외·절차·근거는 연결된 본문과 공식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안전한플랜 · 만화 제작 2026.10.30. · 기관 주소·철골 데이터 개별 대조일은 본문 표시

건설안전 실무만화

안전관리계획서













건설안전 실무만화

안전관리계획서 · 핵심 확인사항

층수 하나만 보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면 놓칠 수 있습니다. 시설물 종류, 굴착, 사용 장비, 가설구조물과 발주·인허가 조건을 함께 검토하세요.

아래에서 제98조제1항과 연결되는 가설구조물 대상 전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시설공사는 제98조제1항의 적용에서 제외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 대상과 중복되면 통합 작성 가능 규정을 확인하되 각각의 제출·검토 절차는 구분합니다.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은 별도 제도입니다.

그림은 이해를 돕는 설명 예시입니다. 전체 대상·예외·절차·근거는 연결된 본문과 공식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안전한플랜 · 만화 제작 2026.10.30. · 기관 주소·철골 데이터 개별 대조일은 본문 표시

건설안전 실무만화

안전관리계획서













건설안전 실무만화

안전관리계획서 · 핵심 확인사항

층수 하나만 보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면 놓칠 수 있습니다. 시설물 종류, 굴착, 사용 장비, 가설구조물과 발주·인허가 조건을 함께 검토하세요.

아래에서 제98조제1항과 연결되는 가설구조물 대상 전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시설공사는 제98조제1항의 적용에서 제외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 대상과 중복되면 통합 작성 가능 규정을 확인하되 각각의 제출·검토 절차는 구분합니다.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은 별도 제도입니다.

그림은 이해를 돕는 설명 예시입니다. 전체 대상·예외·절차·근거는 연결된 본문과 공식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안전한플랜 · 만화 제작 2026.10.30. · 기관 주소·철골 데이터 개별 대조일은 본문 표시

건설안전 실무만화

안전관리계획서













건설안전 실무만화

안전관리계획서 · 핵심 확인사항

층수 하나만 보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면 놓칠 수 있습니다. 시설물 종류, 굴착, 사용 장비, 가설구조물과 발주·인허가 조건을 함께 검토하세요.

아래에서 제98조제1항과 연결되는 가설구조물 대상 전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시설공사는 제98조제1항의 적용에서 제외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 대상과 중복되면 통합 작성 가능 규정을 확인하되 각각의 제출·검토 절차는 구분합니다.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은 별도 제도입니다.

그림은 이해를 돕는 설명 예시입니다. 전체 대상·예외·절차·근거는 연결된 본문과 공식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안전한플랜 · 만화 제작 2026.10.30. · 기관 주소·철골 데이터 개별 대조일은 본문 표시

건설안전 실무만화

안전관리계획서

공식 근거 원문 · 발췌 범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30. · 해설과 구분하여 수록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2., 2016. 5. 17., 2016. 8. 11., 2018. 1. 16., 2019. 12. 24., 2021. 1. 5.>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나. 항타 및 항발기

다. 타워크레인

5의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7. 6., 2016. 1. 12., 2018. 12. 11., 2020. 1. 7.>

공식 원문 열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제2항

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98&lsiSeq=286847&urlMode=lsScJoRltInfoR

표시한 조문·항의 문구를 수록했습니다. 관련 법령 전체와 최신 변경사항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

건설안전 실무만화

안전관리계획서

공식 근거 원문 · 발췌 범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30. · 해설과 구분하여 수록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① 법 제62조제1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25., 2020. 1. 7., 2020. 5. 26.>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1의2. 브라켓(bracket)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4의2.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4의3.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 · 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5.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 ·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② 관계전문가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기술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구조,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와 건설기계 직무 범위 중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해당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직무 범위의 기술사일 것

2. 해당 가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의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일 것

③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1. 7.>

1. 법 제4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2.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

공식 원문 열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제3항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ancYnChk=&chrClsCd=010202&lsJoLnkSeq=1024456501

표시한 조문·항의 문구를 수록했습니다. 관련 법령 전체와 최신 변경사항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